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3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개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가전략기술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확대	3
2. 상속세·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7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3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

조의2제1항 및 제2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전략기술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확대

현 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공제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 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 </tbody> </table>	가업영위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국가전략기술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확대 ○ 공제 한도 상향 - 일반 가업상속: (현행과 같음) - 국가전략기술기업 가업상속: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 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6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8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720억원</td></tr> </tbody> </table>	가업영위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6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80억원	30년 이상	72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6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80억원																
30년 이상	720억원																

-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인데,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60억원, 480억원, 72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 ☐ 현행법¹⁾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

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공제한도(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²⁾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업상속공제는 767건 적용되었고, 평균공제액은 33억원 수준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2)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건수	767	106	110	147	188	216
건당 평균 공제액	33	35	31	26	43	30
전체 공제금액	25,414	3,685	3,454	3,761	8,112	6,402
공제한도 적용 건수	5	-	-	-	3	2

□ 개정안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승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국가전략기술³⁾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및 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다만, 개정안은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제혜택은 기업의 자산규모가 보다 큰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 또한 존재하므로, 국가전략기술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승계 원활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2. 상속세 · 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현 행	김미애의원안																						
☐ 상속세 세율(제26조)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1억원 이하</td><td>10</td></tr> <tr> <td>~ 5억원</td><td>20</td></tr> <tr> <td>~ 10억원</td><td>30</td></tr> <tr> <td>~ 30억원</td><td>40</td></tr> <tr> <td>30억원 초과</td><td>50</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1억원 이하</td><td>10</td></tr> <tr> <td>~ 5억원</td><td>20</td></tr> <tr> <td>~ 10억원</td><td>30</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0</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																						
☐ 증여세 세율(제56조) ☐ 증여세 세율: 제26조의 세율 적용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김미애의원안 2025. 11. 20. 발의(의안번호 14437)

- ☐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여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과 수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증여세”라 함)의 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연혁]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억원~2.5억원	20%	1억원~5억원	20%	1억원~5억원	20%
2.5억원~5.5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억원~50억원	40%	10억원~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세입확충이라는 조세 본유의 국고기능 이외에 복합적인 경제적 · 사회정책적 기능의 수행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속세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찬 · 반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① 상속세는 과세기법의 발달로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조세로서의 기능이 예전보다 감소한 반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사망 시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로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재산을 일궈온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자의 것보다 누진적으로 많이 과세함으로써 자본축적, 자산의 이전 및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여 경제활력을 저해하므로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②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이 아닌 상당한 재산을 무상취득한 일부 부유한 상속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교육의 기회가 약화되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의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므로 상속세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러한 상속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⁴⁾고 하며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상속세의 이러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끊임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상속세제의 부담 완화 주장과 그 반대 입장을 정리함.

- 먼저, 상속증여세율의 인하 및 세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기업경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고용의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임.

4)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이러한 주장은 상속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일부 실증 연구⁵⁾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결과⁶⁾에 근거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과도한 세부담은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부유층의 생산동기를 저하시켜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로 인한 생산력 증대 및 혁신에 대한 기회의 제약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에 따른 저소득층의 후생 증대 기회마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임.

둘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2000년에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 물가상승, 주택가격 상승 등 그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세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소비자물가지수	63.151	74.413	86.373	94.861	100	114.1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5)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10., 송헌재·조하영)
 “Inheritance Law and Investment in Family Firms”(2010, Ellul·Pagano·Panunzi)

6) 수출기업 799개 중 74.3%가 기업승계 이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중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지적 (한국무역협회, '24.1월)

수출기업 799개 중 42.2%가 상속세, 증여세 납부부담 등 제반 기업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국무역협회, '24.1월)

중소기업 625개 중 65.3%가 기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에서 ‘높은 세금부담’을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23.4월)
 30~40대 벤처 CEO 140명 중 대부분이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 (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 (경총, '23.10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구분	2000.1	2005.1	2010.1	2015.1	2021.6	2025.1
종합주택	46.0	60.8	76.4	84.9	100.0	96.2
아파트	35.8	55.2	70.8	82.3	100.0	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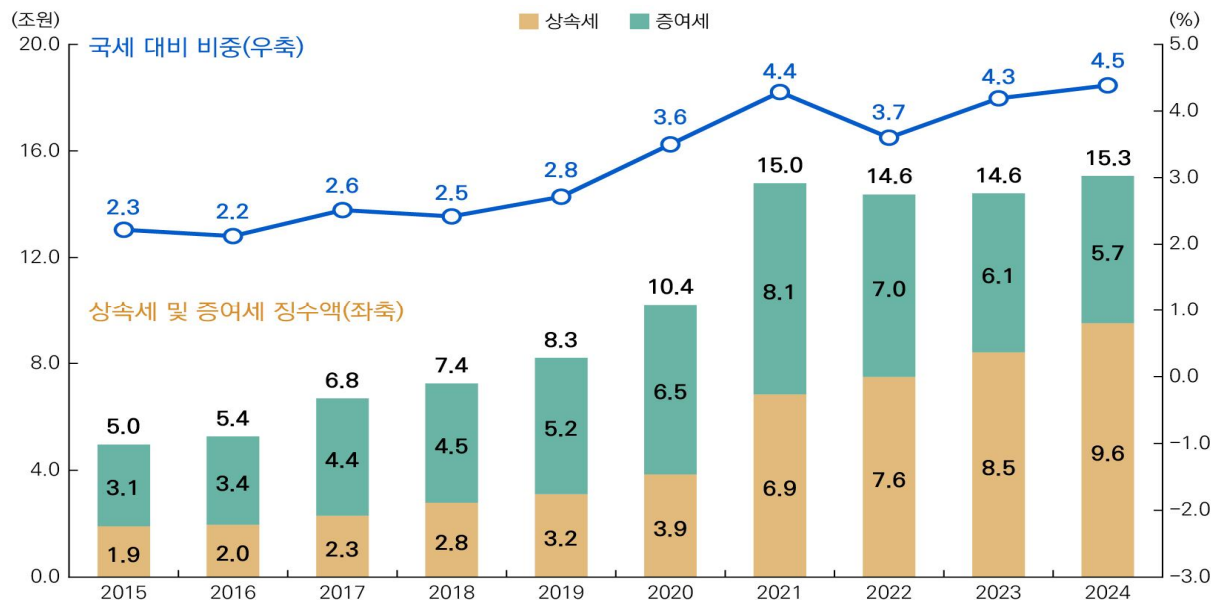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6월=100 기준

한편, 최근 10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5.0조원에서 2021년 15.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연간 15조원 내외의 실적을 보이며 2024년 15.3조원이 집계되고 있음⁷⁾.

이는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상속공제 수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⁸⁾.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336p.

8) 과세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재산은닉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점도 있을 것임.

셋째, OECD 등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이 높은 편임.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경우 6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고,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두고 있는 24개 국가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평균 26%로 조사됨⁹⁾.

또한,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은 2023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1%에 비해 0.6%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 또한 2023년 기준 2.3%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9%p 높고, G7 국가 평균 0.8%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조사됨¹⁰⁾.

OECD 회원국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4개국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이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오스트리아·체코·이스라엘 등의 7개국은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¹¹⁾.

9) 일본 55%, 대한민국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 프랑스 45%, 미국·영국 40%, 독일 30%.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 26%, 기획재정부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332-333p.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331p.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0.3	0.4	0.5	0.7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1	0.0
G7	G7 평균	0.2	0.2	0.3	0.3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7	0.8	0.7	0.8	0.3
	독일	0.2	0.2	0.3	0.3	0.2	0.2	0.0
	이탈리아	0.0	0.0	0.0	0.0	0.1	0.0	0.0
	일본	0.4	0.4	0.4	0.5	0.5	0.5	0.1
	영국	0.2	0.2	0.2	0.3	0.3	0.3	0.1
	미국	0.1	0.1	0.1	0.1	0.2	0.1	0.0

주 : 2023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3	1.6	1.9	2.4	2.1	2.3	1.0
OECD 평균		0.3	0.4	0.4	0.4	0.4	0.4	0.1
G7	G7 평균	0.6	0.7	0.7	0.8	0.8	0.8	0.2
	캐나다	0.0	0.0	0.0	0.1	0.1	0.1	0.1
	프랑스	1.1	1.4	1.5	1.7	1.6	1.7	0.6
	독일	0.5	0.5	0.7	0.7	0.6	0.6	0.1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1	0.0
	일본	1.2	1.3	1.3	1.5	1.5	-	0.3
	영국	0.7	0.7	0.8	0.8	0.8	0.8	0.1
	미국	0.5	0.4	0.5	0.5	0.6	0.6	0.1

주 : 1. 2023년 OECD 평균은 호주, 그리스 및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며, G7 평균은 일본을 제외한 평균임

2. 일본은 2022년과 2014년 차이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주요국의 상속 관련 과세 체계]

구분		국가
상속증여세 과세 국가	유산취득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20개국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 소득세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

자료 : IBFD - Tax Research Platform 국가별 자료 참조

□ 반면, 상속증여세를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
위는 평균 - 66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¹²⁾는 2017년 0.584에서 2024
년 0.612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2)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4,894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669	-0.1
순자산 2분위	2,565	0.8	3,067	0.7
순자산 3분위	6,187	2.0	7,689	1.7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65	3.0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185	4.5
순자산 6분위	22,050	7.0	28,280	6.3
순자산 7분위	29,536	9.4	38,803	8.6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5,032	12.3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3,629	18.6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9,516	44.4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0.605	0.612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둘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 부담 수준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소득세와 상속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이를 통해 축적한 재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세제로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분배기능 측면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

담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조세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부담 수준은 높지만, 소득세 부담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임.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단위 :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3.8	4.8	5.2	6.1	6.6	5.7	1.9
OECD 평균	7.8	8.0	8.3	8.3	8.2	8.2	0.4
G7 평균	9.3	9.7	10.0	10.2	10.3	10.1	0.7

주: 1.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2.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제외한 36개국 대상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단위 :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6.3	17.5	18.8	20.4	20.5	19.8	3.6
OECD 평균	22.8	23.5	24.1	23.7	23.6	23.6	0.8
G7 평균	27.4	28.1	28.6	28.7	28.8	30.2	2.8

주: 1.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 일본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2. G7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일본 제외한 6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셋째,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의 완화 및 기업승계 지원이 부유층의 투자 및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재분배기능의 약화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 간 기초부존자원의 차이가 ‘기회의 평등’을 제약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따른 불공평이 사회적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일부 연구결과¹³⁾ 등을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순환과 작동에 필수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경제주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제주체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불공평으로 인한 기회의 제약이 사회적 창 의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관하여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 국제적 동향,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161

13)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